

## 통상근로계수
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」 제24조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31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### I. 통상근로계수

통상근로계수는 73/100으로 한다.

### II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